

『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(1, 2권역)』 사업집행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,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『나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(1, 2권역)』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(PQ)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8일

나 주 시 장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가. 용역개요

연번	용역명	위 치	과업량	총용역비 (2026년) ※ 부가세 포함	과업기간 (2026년)
1	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(1권역)	나주시 금남동 외 9개 읍·면·동 소하천 72개소	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 L=106.04km	3,883,500천원 (100,000천원)	24개월 (3개월)
2	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(2권역)	나주시 공산면 외 8개 면·동 소하천 72개소	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 L=103.80km	3,821,000천원 (100,000천원)	24개월 (3개월)

- ※ 책임(참여)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용역에만 낙찰되는 방식(‘Knock Down’)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용역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용역에 낙찰된 업체(공동수급체 포함)는 이후 연번 용역 낙찰에서 제외
- ※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, 용역추진 사정에 따라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시행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다. 입찰예정시기: 2026년 10월중(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2. 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, 공고일 현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**건설엔지니어링업 [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(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)]** 등록을 필한 업체
- 나.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**건설부문(수자원개발, 토질·지질, 토목구조)**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
- 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**방재관리대책대행자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)**로 등록을 필한 업체
- 라. 측량부문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의거 **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** 등록을 필한 업체로,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**중·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**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【세부품명: 측량용역(8115160401)】**를 소지한 업체
- ※ ‘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’와 ‘직접생산확인증명서’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
- ※ 본 용역의 측량조사 부문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“설계” 업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를 공표함

3.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

- 가.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**단독 또는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**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**참가자격 라항(측량부문)**분야는 해당자격을 갖춘 업체와 **공동도급(분담이행방식)**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**5개사 이내**로 하여야 함.(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% 이상)

※ 과업분담 비율

용역명	합계(%)	엔지니어링(%)	측량(%)
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(1권역)	100%	80.85%	19.15%
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(2권역)	100%	80.93%	19.07%

나. **중전의 전라남도**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**도내업체와 49%이상 공동도급(참여)를 권장**합니다.(전남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)

※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“0” 점으로 처리

※ 지역업체 참여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%이상일 경우 3점을 부여합니다

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」 제3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

라.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전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

4.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

가. 작성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

- 조달청 나라장터(<http://www.g2b.go.kr>) 게시로 같음

나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

1) 일 시: 2026. 9. 16.(수) 09:00 ~ 16:00

2) 장 소: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(061-339-7864)

3) 제출서류

-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
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)

-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[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,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(無記)로 제출]

-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개(업무중복도 파일 첨부)

· 사업수행능력평가서(스캔 PDF)

·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, 업무중복도, 조직도, 자기평가서(한글파일)

※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1, 2권역 동일한 공동수급체(참여지분) 및 기술인 (사업책임기술인·분야별책임기술인·분야별참여기술인)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1set만 제출 ►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(1, 2권역)

다. 제출방법: 직접제출(우편, e-mail, 팩스,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)

※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

라. 등록구비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인감지참)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 - 방재관리대행자 증명 서류 사본 1부
 -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(회원수첩 포함)사본 1부
 -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
- ※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
5.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

가. 「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-44호)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, 평가 점수가 **일정점수(87.50점) 이상인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** (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.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,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)

나.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.

다.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)」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(별표1) 1.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(사업수행능력평가)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, 평가하여 종합평점 [수행능력평가(64)+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(1)+지역업체 참여 점수(3)+경영상태(2)+가격점수(30)]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

라.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(1점)를 모두 부여하며,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(2점)를 모두 부여함

마.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하여 평가하고,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 제11장(입찰유의서)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

6. 기타사항

가.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,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

- 나.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
다.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
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
- 라.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,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
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
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
- 마.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의해 사실대로
작성하여야 하며, 평가자료에 허위,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,
낙찰취소,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
- 바.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(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)는 그 항목에
대하여 “0점” 처리 합니다
- 사.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(총점)하며
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」 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
단, PQ 평가항목 중 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” 평가는
제외합니다.
- 아.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
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자.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, 입찰공고문, 과업지시서 등
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해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
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
- 차.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(061-339-7864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